

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(임시)요율표

1. 주택(부속토지 포함)의 중개보수

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별표1

거래내용	거래금액	상한요율	한도액
매매·교환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6	25만원
	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	1천분의 5	80만원
	2억원 이상 9억원 미만	1천분의 4	
	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	1천분의 5	
	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	1천분의 6	
	15억원 이상	1천분의 7	
임대차 등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5	20만원
	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	1천분의 4	30만원
	1억원 이상 6억원 미만	1천분의 3	
	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	1천분의 4	
	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	1천분의 5	
	15억원 이상	1천분의 6	

※ 중개보수는 「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」 개정되기 전까지 개정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(2021.10.19.시행) 별표1에 따름

2. 오피스텔의 중개보수(시행규칙 제20조) 전용면적85㎡이하 일정설비(부엌, 욕실 등)를 갖춘 오피스텔

구분	상한요율	적용시기
매매·교환	1천분의 5	'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
임대차 등	1천분의 4	

3. 그 외(토지, 상가)의 중개보수(시행규칙 제20조)

구분	보수요율
매매·교환·임대차 등	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

위 1,2,3 조항의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

- 1) 거래금액 = 보증금 + (월차임 × 100)
- 2) 1)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(재계산) 거래금액 = 보증금 + (월차임 × 70)

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: [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(융자포함)+프리미엄] × 요율

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(도 조례 제3조)

- 1)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: 1건당 1,000원
- 2)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: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
- 3) 여비 등(교통비, 숙박료) : 실비

기타

- 1) 상가+주택의 경우 ⇒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,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
- 2)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·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음
- 3)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작성 ⇒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를 확인